|  |  |  |
| --- | --- | --- |
|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정비 규범화 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14]62호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 각 직속기구:중국공산당 18기3중 전원회의 정신과 <예산관리제도의 개혁을 심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4]45호)의 요구에 맞춰, 재정규율을 숙정하고 통일개방 및 경쟁이 질서화된 시장시스템을 다그쳐 건설하기 위하여 세수 등 우대정책의 정비규범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1.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정비규범화하는 중대한 의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최근년간, 지역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과 부문은 특정 기업 및 그 투자자(혹은 관리자) 등에 대해 세수와 비세수 등의 수입과 재정지출 등 방면에서 우대정책(이하 세수 등 우대정책으로 약칭)을 실시함으로서 일정정도에서 투자성장과 산업집결을 촉진하였다. 단 이러한 세수 등 우대정책은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국가거시조정정책의 효과에 영향주며 심지어 중국의 대외승낙을 위반하여 국제무역 마찰을 야키시킬 수 있다.세수 등 우대정책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하는 것은 공평한 시장경쟁환경을 수호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시스템의 형성을 촉진하며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작용을 발휘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국가거시경제정책을 실현하고 지방보호와 업종독점을 타파하며 경제구조의 업데이트를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재정규율을 숙정하고 부패를 예방 및 징벌하며 정상적인 수입분배질서를 수호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재세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의법행정, 과학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며 전면적이고 규범화하며 공개투명한 예산제도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2. 총체적 요구**(1) 지도사상등소평이론, “3개대표”의 중요사상 및 과학발전관을 지도로 당의 18차대회와 18기3중, 4중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의사결정배치를 실현하며 통일개방 및 경쟁이 질서화된 시장시스템을 다그쳐 건설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정비규범화화는 것을 통하여 지방보호와 부정당경쟁을 반대하고 상품과 요소의 자유유동을 영향주는 시장장벽을 진력하여 해제함으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완벽화를 추진하여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작용을 발휘하도록 하여 경제구조의 업데이트를 촉진하는 것이다.(2) 주요원칙1) 상하연동하여 전면적으로 규범화한다. 각 관련부문은 법률법규와 국무원의 통일요구에 따라 본 부문에서 출범한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정비규범화하고, 각 지역은 정비규범화작업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법률법규 위반 혹은 공평경쟁에 영향주는 정책은 모두 정비규범화 범위에 포함시키며 세수와 비세수 등 수입형식의 우대정책을 규범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납부하는 세수와 비세수 수입과 대응되는 재정지출형식의 우대정책도 규범화하여야 한다.2)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착실하게 추진한다. 현재에 입각하고 주차를 구분하여 법률법규를 위반한 우대정책에 대해 견결히 취소하고 WTO 규칙과 중국의 대외승낙에 부함하도록 하며 점진적으로 기타의 우대정책도 규범화하는 한편, 미래에 착안하여 정비규범화작업의 전개를 계기로 장기유효한 관리메카니즘을 구축 및 건전히 한다.3) 정보를 공개하고 감독을 받아들인다. 정부정보 공개요구에 따라 세수 등 우대정책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투명도를 증강하며, 공신력을 제고한다. 제보제도를 건립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며 감독균형을 보강한다.**3. 각종 유형의 세수 등 우대정책을 확실히 규범화 한다.** (1) 세수정책의 제정권한을 통일한다. 세수법정원칙을 견지하여 전문 조세법률법규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 자치법>에 규정된 세정관리권한을 제외한 외, 각지역은 일률로 자체로 세수우대정책을 제정하지 못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각 부문은 기타의 법률, 법규, 규범, 발전기획 및 지역정책 제정시 구체적인 세수우대정책을 규정하지 못한다. (2) 비세수 등의 수입관리를 규범화한다. 현행 행정사업성 수금, 정부성기금, 사회보험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 규정을 어기고 기업에 대해 행정사업성 수금과 정부성기금을 감면 또는 징수연기하는 것을 엄금하며 우대가격 혹은 제로가격으로 토지를 출양하는 것을 엄금한다. 국유자산, 국가기업지분 및 광산 등 국가자원을 저가로 양도하는 것을 엄금한다. 법률법규와 국무원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감면 혹은 징수연기하는 것을 엄금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통일규정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3) 재정지출관리를 엄격히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각 지역, 각 부문은 기업에 재정우대정책을 규정하지 못한다.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기업 및 투자자(혹은 관리자)가 납부하는 세수 혹은 비세수 수입과 연동된 재정지출에 대해 제정한 우대정책은 견결히 취소한다. 이에는 선징수후관급, 수입지출동시산정, 재정장려 또는 보조, 대납 또는 보조 등의 형식으로 토지출양수입 등을 감면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타의 우대정책, 예하면 기업을 대신하여 사회보험료납부 등 경영원가를 부담하거나 전기수도요금의 우대를 부여하거나 재정장려 또는 보조 등의 형식을 통하여 타지역의 기업을 본 지역에 입주시키거나 혹은 본 지역에서 세금과공과를 납부하도록 하거나 일부구역에 대한 지방성재정수입을 전액 남기거나 또는 추가환급하는 등에 대해 점차적으로 규범화한다.**4. 현재 유효한 각종 유형의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각 지역, 각 관련부문은 한차례의 전문정비를 진행하여 본 지역, 본 부문이 제정출범한 세수 등 우대정책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과 체결한 계약, 합의서, 비망록, 회의개요 또는 회담개요 및 “1안 1의” (一事一议)형식의 청시, 보고와 비준답복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분석정비하여 베이스남바를 파악하고 누락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한다.전문적인 정비처분을 통하여 국가 법률법규를 위반한 우대정책은 일률로 집행을 중지하고 통지를 발표하여 폐지하여야 한다. 법률법규의 장벽이 없고 확실히 유지가 필요한 우대정책은 성급 인민정부 혹은 관련부문이 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및 종합후 전문의제로 국무원에 청시하여야 한다.각 성급 인민정부와 관련부문은 2015년 3월말 전으로 재정부에 본 성(구, 시)와 본 부문에서 전개한 세수 등 우대정책의 전문 정비처분상황을 재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부는 종합후 국무원에 보고한다.**5. 장기 유효한 메카니즘을 건립 건전히 한다.** (1) 평가와 퇴출 메카니즘을 구축한다. 법률법규로 규정한 세수우대정책 및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실시하는 비세수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우대정책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선두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법률법규 장벽이 없고 또한 보급가치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다그친다. 집행시효가 명확한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상 일률로 시효가 만기되면 집행을 정지한다. 집행시효가 불분명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시행시효를 설정한다. 경제발전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고 효과가 선명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선두로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조정 또는 취소 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결정하도록 한다. (2) 평가감독 메카니즘을 건전히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주요책임자를 본 지역의 세수 등 우대정책 관리의 제1책임자로 명확히 정하고, 세수 등 우대정책의 관리상황을 지도팀 및 지도간부에 대한 종합심사평가시스템의 중요내용으로 삼아 임용발탁, 관리감독의 중요한 의거로 한다. (3) 정보공개와 고발제도를 건립한다. 목록리스트제도를 구축하여 국가비밀과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외의 세수 등 우대정책의 제정, 조정 혹은 취소 등 정보에 대해 목록리스트를 형성하여 적정한 형식으로 적시에 완벽하게 사회에 공개한다. 고발제도를 건립하고 각방면의 역량을 격려 및 인도하여 세수 등 우대정책을 위법제정 및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한다. (4) 책임추궁 메카니즘을 보강한다. 정기검사와 문책제도를 건립하여 감찰부, 재정부, 감사서, 세무총국 등 부문은 직책분업에 따라 각유형의 세수 등 우대정책을 위법제정한 행위에 대해 적시에 조사처분 및 시정하여야 한다. 본 통지 발표일로부터 규정을 위반하고 세수 등 우대정책을 출범하거나 계속하여 실시하는 지역과 부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정부와 부문의 주요책임자 및 정책제정부문, 정책집행부문의 주요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또한 상응한 규율처분을 부과할 것이다. 중앙재정은 세수 등 우대한도금액의 일정비율로 당해 지역에 대한 세수반환금 혹은 이월예산금을 차감한다.**6. 보장조치를 건전히 한다.**(1) 조직지도를 보강한다. 재정부를 선두로 한 세수 등 우대정책에 대한 부문급(部际)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여 정책지도와 통일조율을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감독조사와 추적집행을 보강하여 중대문제를 연구 해결하고 중대사항은 적시에 국무원에 보고한다. 성, 시, 현급 인민정부는 재정부문을 선두로, 관련부문이 협조하는 세수 등 우대정책 정비처분메카니즘을 구축하여 본 지역의 정비규범화작업을 조직 실시한다.(2) 관련 정책을 완벽화한다. 정비규범화작업을 착실히 전개하는 동시에 각 지역, 각 부문은 당중앙, 국무원의 통일배치에 따라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 세수 등 우대정책을 열심히 집행하고 신흥산업을 크게 양성하여 소형기업의 빠른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 사회구제와 사회복리제도를 일층 완벽화하고 도농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장역량을 보강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기초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노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여론의 인도를 보강한다. 각 지역, 각 부문과 관련 매스템은 정부 혹은 부문홈폐이지, 라디오티비, 지면매체 등 루트를 통하여 정책의 선전 및 해석을 보강하고 적시에 정보를 발표하며 사상을 통일하고 공통인식을 응집시켜 양호한 여론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세수 등 우대정책의 규범화작업은 전체국면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책성이 강하고 영향면이 광범하다. 각 지역, 각 부문은 크게 중시하고 대세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지도를 보강하고 배치를 주도면밀히 하며 적시에 감독조사하여 세수 등 우대정책의 규범화작업을 확실하게 진행하여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국무원2014년 11월 27일 |  | **国务院关于清理规范税收等优惠政策的通知**国发〔2014〕62号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根据党的十八届三中全会精神和《国务院关于深化预算管理制度改革的决定》（国发〔2014〕45号》要求，为严肃财经纪律，加快建设统一开放、竞争有序的市场体系，现就清理规范税收等优惠政策有关问题通知如下：　　**一、充分认识清理规范税收等优惠政策的重大意义**　　近年来，为推动区域经济发展，一些地区和部门对特定企业及其投资者（或管理者）等，在税收、非税等收入和财政支出等方面实施了优惠政策（以下统称税收等优惠政策），一定程度上促进了投资增长和产业集聚。但是，一些税收等优惠政策扰乱了市场秩序，影响国家宏观调控政策效果，甚至可能违反我国对外承诺，引发国际贸易摩擦。　　全面规范税收等优惠政策，有利于维护公平的市场竞争环境，促进形成全国统一的市场体系，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决定性作用；有利于落实国家宏观经济政策，打破地方保护和行业垄断，推动经济转型升级；有利于严肃财经纪律，预防和惩治腐败，维护正常的收入分配秩序；有利于深化财税体制改革，推进依法行政，科学理财，建立全面规范、公开透明的预算制度。**二、总体要求**（一）指导思想。　　以邓小平理论、“三个代表”重要思想、科学发展观为指导，全面贯彻党的十八大和十八届三中、四中全会精神，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以加快建设统一开放、竞争有序的市场体系，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健康发展为目标，通过清理规范税收等优惠政策，反对地方保护和不正当竞争，着力清除影响商品和要素自由流动的市场壁垒，推动完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促进经济转型升级。　　（二）主要原则。　　1.上下联动，全面规范。各有关部门要按照法律法规和国务院统一要求，清理规范本部门出台的税收等优惠政策，各地区要同步开展清理规范工作。凡违法违规或影响公平竞争的政策都要纳入清理规范的范围，既要规范税收、非税等收入优惠政策，又要规范与企业缴纳税收或非税收入挂钩的财政支出优惠政策。　　2.统筹规划，稳步推进。既要立足当前，分清主次，坚决取消违反法律法规的优惠政策，做到符合世界贸易组织规则和我国对外承诺，逐步规范其他优惠政策；又要着眼长远，以开展清理规范工作为契机，建立健全长效管理机制。　　3.公开信息，接受监督。要按照政府信息公开的要求，全面推进税收等优惠政策相关信息公开，增强透明度，提高公信力；建立举报制度，动员各方力量，加强监督制衡。　　**三、切实规范各类税收等优惠政策**　　（一）统一税收政策制定权限。坚持税收法定原则，除依据专门税收法律法规和《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规定的税政管理权限外，各地区一律不得自行制定税收优惠政策；未经国务院批准，各部门起草其他法律、法规、规章、发展规划和区域政策都不得规定具体税收优惠政策。　　（二）规范非税等收入管理。严格执行现有行政事业性收费、政府性基金、社会保险管理制度。严禁对企业违规减免或缓征行政事业性收费和政府性基金、以优惠价格或零地价出让土地；严禁低价转让国有资产、国有企业股权以及矿产等国有资源；严禁违反法律法规和国务院规定减免或缓征企业应当承担的社会保险缴费，未经国务院批准不得允许企业低于统一规定费率缴费。　　（三）严格财政支出管理。未经国务院批准，各地区、各部门不得对企业规定财政优惠政策。对违法违规制定与企业及其投资者（或管理者）缴纳税收或非税收入挂钩的财政支出优惠政策，包括先征后返、列收列支、财政奖励或补贴，以代缴或给予补贴等形式减免土地出让收入等，坚决予以取消。其他优惠政策，如代企业承担社会保险缴费等经营成本、给予电价水价优惠、通过财政奖励或补贴等形式吸引其他地区企业落户本地或在本地缴纳税费，对部分区域实施的地方级财政收入全留或增量返还等，要逐步加以规范。**四、全面清理已有的各类税收等优惠政策**　　各地区、各有关部门要开展一次专项清理，认真排查本地区、本部门制定出台的税收等优惠政策，特别要对与企业签订的合同、协议、备忘录、会议或会谈纪要以及“一事一议”形式的请示、报告和批复等进行全面梳理，摸清底数，确保没有遗漏。　　通过专项清理，违反国家法律法规的优惠政策一律停止执行，并发布文件予以废止；没有法律法规障碍，确需保留的优惠政策，由省级人民政府或有关部门报财政部审核汇总后专题请示国务院。　　各省级人民政府和有关部门应于2015年3月底前，向财政部报送本省（区、市）和本部门对税收等优惠政策的专项清理情况，由财政部汇总报国务院。　　**五、建立健全长效机制**　　（一）建立评估和退出机制。对法律法规规定的税收优惠政策和经国务院批准实施的非税收入及财政支出优惠政策，财政部要牵头定期评估。没有法律法规障碍且具有推广价值的政策，要尽快在全国范围内实施；有明确执行时限的政策，原则上一律到期停止执行；未明确执行时限的政策，要设定政策实施时限。对不符合经济发展需要、效果不明显的政策，财政部要牵头会同有关部门提出调整或取消的意见，报国务院审定。　　（二）健全考评监督机制。明确地方各级人民政府主要负责人为本地区税收等优惠政策管理的第一责任人，将税收等优惠政策管理情况作为领导班子和领导干部综合考核评价体系的重要内容，作为提拔任用、管理监督的重要依据。　　（三）建立信息公开和举报制度。建立目录清单制度，除涉及国家秘密和安全的事项外，税收等优惠政策的制定、调整或取消等信息，要形成目录清单，并以适当形式及时、完整地向社会公开。建立举报制度，鼓励和引导各方力量对违法违规制定实施税收等优惠政策行为进行监督。　　（四）强化责任追究机制。建立定期检查和问责制度，监察部、财政部、审计署、税务总局等部门要按照职责分工，及时查处并纠正各类违法违规制定税收等优惠政策行为。自本通知印发之日起，对违反规定出台或继续实施税收等优惠政策的地区和部门，要依法依规追究政府和部门主要负责人和政策制定部门、政策执行部门主要负责人的责任，并给予相应纪律处分；中央财政按照税收等优惠额度的一定比例扣减对该地区的税收返还或转移支付。**六、健全保障措施**　　（一）加强组织领导。建立由财政部牵头的清理税收等优惠政策部际联席会议制度，具体负责政策指导和统筹协调，加强监督检查和跟踪落实，研究解决重大问题，重大事项及时报告国务院。省、市、县级人民政府要建立由财政部门牵头、相关部门配合的清理税收等优惠政策工作机制，组织实施本地区的清理规范工作。　　（二）完善相关政策。在扎实开展清理规范工作的同时，各地区、各部门要按照党中央、国务院的统一部署，认真落实国家统一制定的税收等优惠政策，大力培育新兴产业，积极支持小微企业加快发展，进一步完善社会保险、社会救助和社会福利制度，加大对城乡低收入群体的保障力度，努力促进就业和基本公共服务均等化。　　（三）加强舆论引导。各地区、各部门和有关新闻单位要通过政府或部门网站、广播电视、平面媒体等渠道，加强政策宣传解读，及时发布信息，统一思想、凝聚共识，营造良好的舆论氛围。　　规范税收等优惠政策工作事关全局，政策性强，涉及面广。各地区、各部门要高度重视，牢固树立大局意识，加强领导、周密部署、及时督查，切实将规范税收等优惠政策工作抓实、抓好、抓出成效。　　　　　　　　　　　　　　　　　国务院2014年11月27日 |